



손해보험의 이해 12: 화재보험 개념 및 종류

김동겸 선임연구원

■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¹⁾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 화재보험의 목적에는 건물 등의 부동산 외에도 기계나 각종 설비, 원료나 재고품 및 귀중품 등의 동산이 포함되며,²⁾ 부동산이나 동산의 멸실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 등과 같은 간접적 손해 또한 보상해 줌.

■ 타 손해보험 종목들과 비교해볼 때,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 잔존보험금액방식, 기간보험(time policy)이라는 특징을 보임.

- 첫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 시점에 보험가액³⁾이 정해지는 기평가보험(valued policy)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시점에 보험가액이 결정되는 미평가보험임.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 간 “피보험이익”⁴⁾의 가액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이나, 특별약관 중 서화, 골동품 등에 적용하는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은 기평가보험에 해당함.
- 둘째,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중 다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자동복원방식(automatic reinstatement)이 아닌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이 되는 잔존보험금액방식임.
 - 그러나 화재보험도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복원시킬 수가 있으며, 장기화재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추가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복원됨.

1) 보험의 목적(items subject to loss)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피보험자의 재화 등을 의미함.
 2) 상법 제685조에서는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음.
 3)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에 대해 입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으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 평가액을 의미함. 한편,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란 보험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손해보상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함.
 4)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함.

- 셋째, 화재보험은 일정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정해지는 기간보험임.⁵⁾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문약관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과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으로 재분류 할 수 있음.
 - 국문약관 중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은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공장건물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함.⁶⁾
 - 한편, 영문약관으로는 1904년 영국의 화재보험위원회(Fire Office's Committee-Foreign)에서 제정한 F.O.C Policy Form, 1943년에 제정된 미국식화재보험약관인 American Standard Policy Form, Commercial Union Policy Form 등이 있음.
- 또한,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여부에 따라 특수건물보험과 비특수건물보험으로도 구분하기도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⁷⁾ 소유자는 건물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상 또는 부상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손해보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됨.⁸⁾

〈표 1〉 물건에 따른 화재보험의 분류

| 구분 | 분류 기준 |
|------|---|
| 주택화재 |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보장 |
| 일반화재 |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보장 |
| 공장화재 |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보장 |
| 기타화재 | 상기분류 이외의 화재보험종목 |

자료: 금융감독원(20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 보험의 종류.

5) 반면, 적하보험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화물을 선적할 때 개시되고 양륙할 때 종료되는 구간보험(voyage policy)임.
 6)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폭발과 파열에 대한 보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르면,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의미함.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건물에 속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학원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병원 건물, 연면적 3,000㎡이상의 관광숙박시설·공연건물·대규모점포,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